

[] 건설기계형식 승인(변경승인)신청서
[] 건설기계형식 신고(변경신고)서
[]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승인(변경승인): 15일 신고(변경신고): 10일 동일형식수입신고: 7일
------	------	------	--

신청 (신고)인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 주소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 (전화번호: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건설기계명	규격
-------	----

건설기계형식

원동기형식

제작사명(제작국) (전화번호:)

변경승인신청(신고)의 경우	변경 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(신고)인: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
검사대행자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	형식승인: 572,000원 형식변경승인: 286,000원 형식신고: 462,000원 형식변경신고: 231,000원 동일형식수입신고: 231,000원
------	-------	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첨부서류

1. 형식승인(변경승인)신청

- 가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
- 나. 건설기계의 외관도
- 다. 변경 전·후의 제원대비표(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
- 라.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). 이 경우 동 서류는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, 정부나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·연구기관(이하 "공인시험·연구기관"이라 합니다)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도로이동 시의 분해·운송방법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)
- 바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설기계의 제작·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. 다만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
2. 형식신고(변경신고)

- 가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
- 나. 건설기계의 외관도
- 다. 변경 전·후의 제원대비표(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
- 라.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).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, 공인시험·연구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도로이동 시의 분해·운송방법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)
- 바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설기계의 제작·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. 다만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
3.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

- 가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
- 나. 선적서류 사본
- 다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. 다만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